
전 주 천 마 지 구 도 시 개 발 사 업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2. 5.



전 주 시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위한 국방부 합의각서(2018.12.28.)가 체결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설정 필요
- 군부대(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전주시 도시축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지 북측의 에코시티와 연계 계획하여 북부 생활권 거점지역으로 육성 및 장기적·안정적으로 토지 및 주택공급을 하고자 함

나. 계획의 목적

- 계획지구는 주변에 전라선 철도, 고속도로, 국도 26호선 등이 연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인근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압력 가중 등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산발적 소규모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전주시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능동적 대처와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전주시의 신(新) 거점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지역 중심성 강화
- 시가지 내 미개발 잔여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거안정도모와 정주 여건을 개선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전라북도 전주시 송천동 일원에 위치하며,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면적 : 446,213㎡)을 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의 2.개발기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바이다.

<표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3 계획의 추진 경위

- 2015.07.17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6호)
- 2018.07.13 :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기간연장) 결정 고시(전주시 고시 제2018-87호)
- 2018.12.28 :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 2020.04.14 :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청 입안
- 2020.08.07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주시 고시 제2020-182호)
- 2022. 0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2022. 03.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2. 0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 2022. 05. :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2. 0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예정)
- 2022. 07. :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예정)

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3번지 일원
- 면 적 : 446,213m²
 - 기정 471,443m², 변경 446,213m² (감 25,230m²)

다. 시간적 범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2020.08.07.) ~ 환지처분 예정일

라. 사업시행자

- 전주시

마. 승인기관

- 전주시

바.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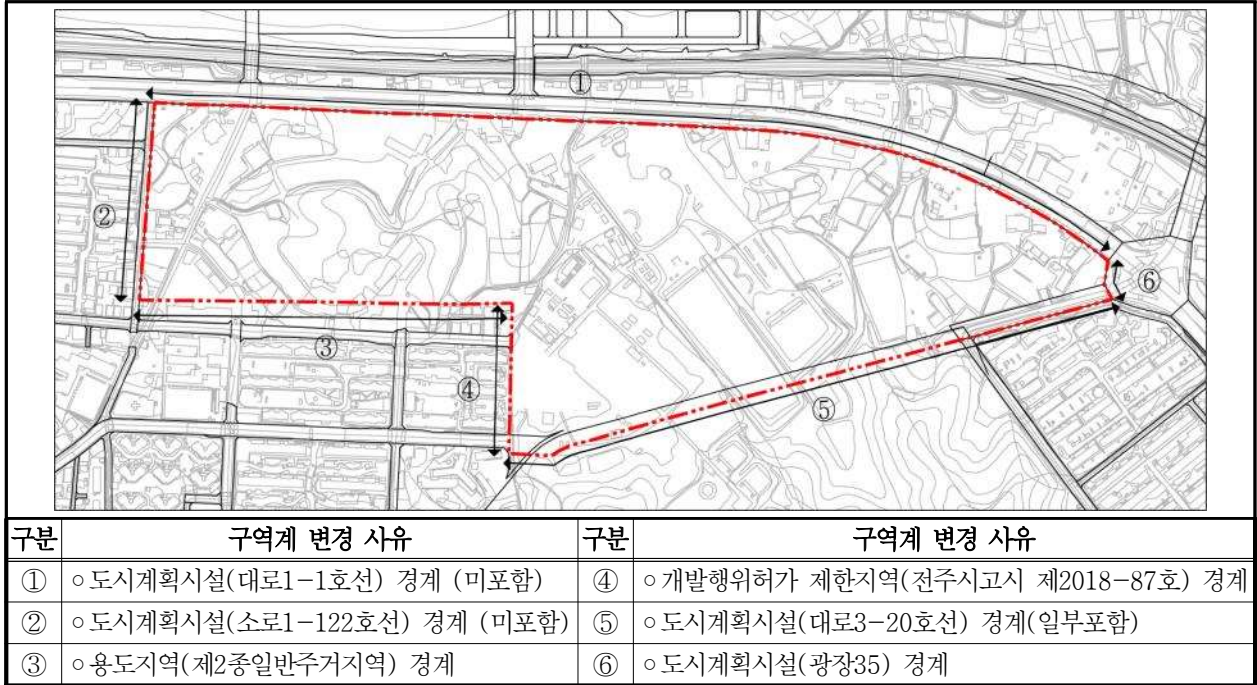
[1] 구역계 설정

[가] 구역 결정 설정 및 변경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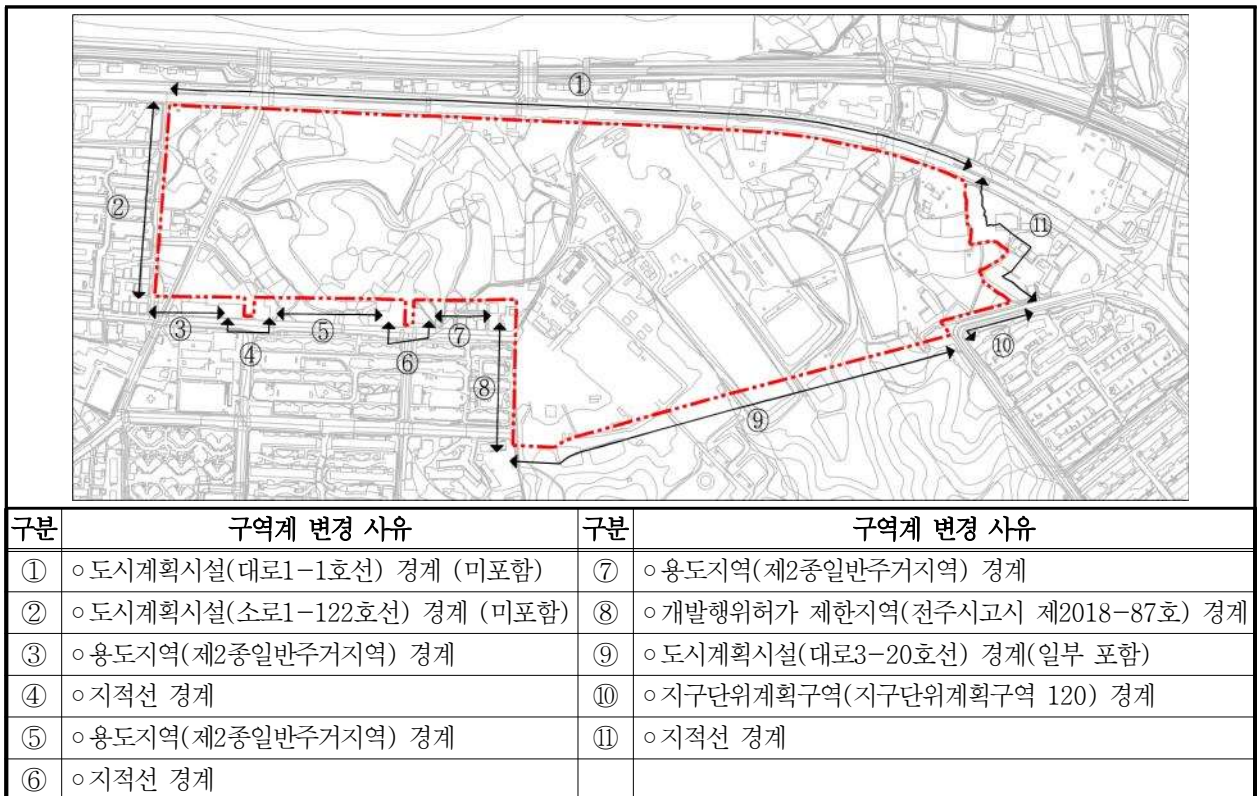
-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15.7.17. ~2020.7.16., 전주시 고시 제2018-87호)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지구·구역 및 도시 계획시설 경계를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계 설정
- 개발계획 수립상 존치를 요청하고 주거지 성격에 상충하는 장례식장, 충전소, 교회를 구역에서 제척
- 면적 : 기정 471,443m², 변경 446,213m² (감 25,230m²)

[나] 구역계 설정

1) 기정



2)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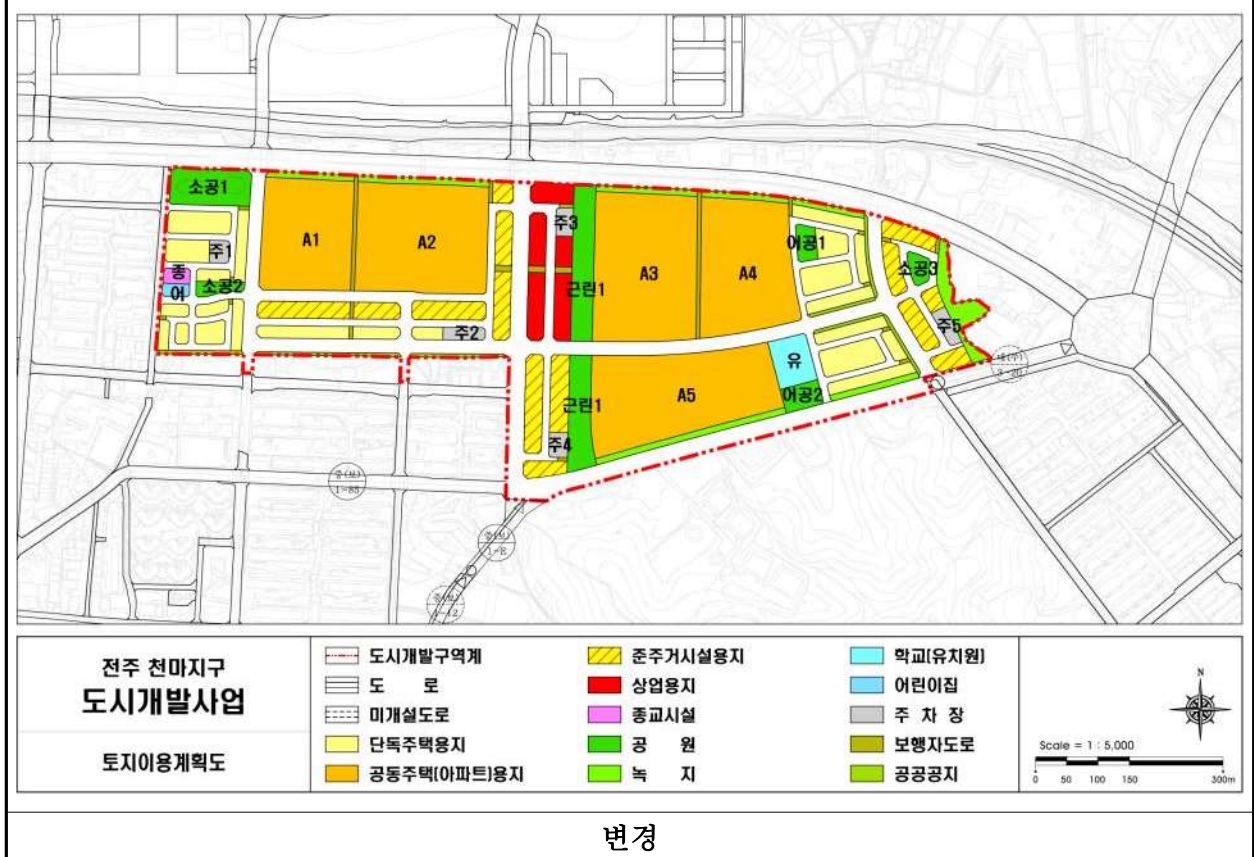


[2]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합계		471,443	100.0	446,213	100.0	
주거용지	소계	248,202	52.6	249,728	56.0	
	공동주택용지	176,466	37.4	171,335	38.4	
	단독주택용지	50,075	10.6	42,797	9.6	
	준주거시설용지	21,661	4.6	35,596	8.0	
상업용지		15,541	3.3	11,792	2.6	
기반시설용지	소계	190,799	40.5	182,760	41.0	
	일반도로	117,022	24.8	113,827	25.5	
	보행자도로	2,558	0.5	5,066	1.1	
	공공공지	-	-	5,270	1.2	
	주차장	5,820	1.2	6,285	1.4	
	공원	31,628	6.7	30,259	6.8	
	녹지	15,022	3.2	17,236	3.9	
	학교	11,018	2.3	-	-	
	유치원	1,300	0.3	4,817	1.1	
	종교시설	3,365	0.7	-	-	
	복합문화시설	3,066	0.7	-	-	
준치시설용지	소계	16,901	3.6	1,933	0.4	
	유치원	958	0.2	890	0.2	
	장례식장	4,283	0.9	-	-	
	종교시설	6,729	1.4	1,043	0.2	
	주유소/충전소	4,931	1.0	-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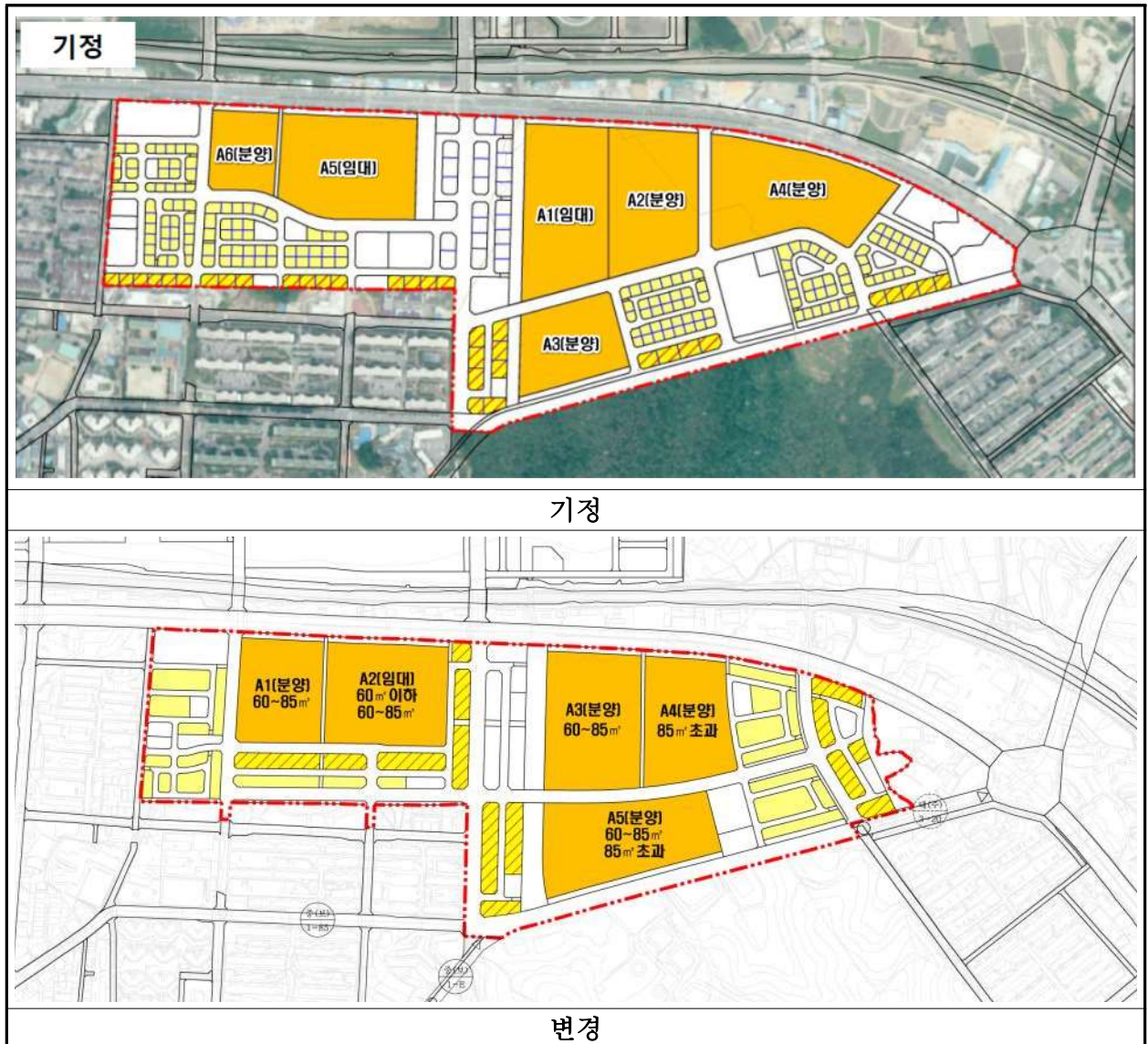


변경

[그림 1.4 - 1] 토지이용계획도(안)

[2] 인구 및 주택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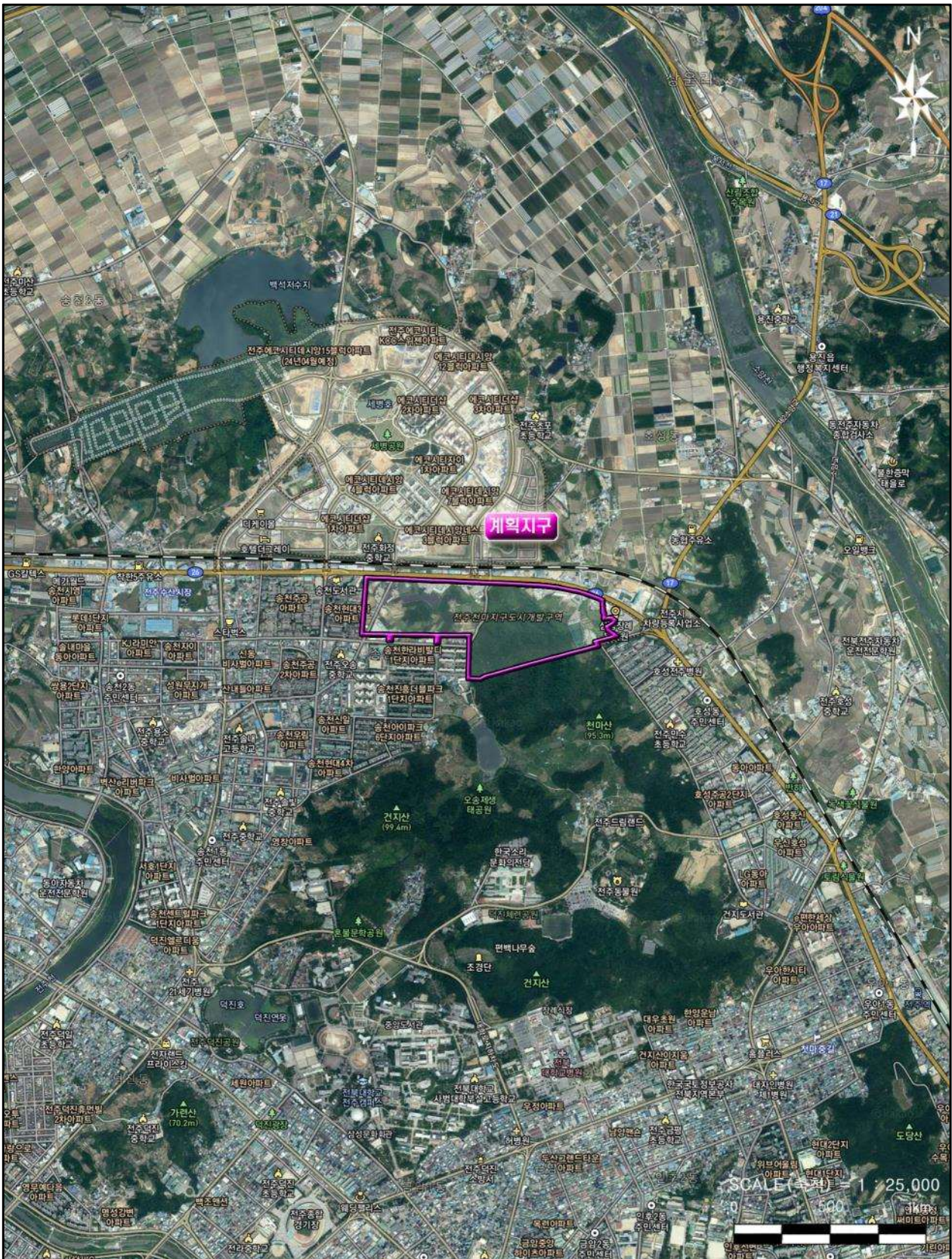
구분	면적(m ²)		구성비(%)		세대수(세대)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26,541	214,132	100.0	100.0	3,107	2,943	7,769	6,769
단독주택용지	50,075	42,797	22.1	20.0	170	142	425	327
공동주택용지	176,466	171,335	77.9	80.0	2,937	2,801	7,344	6,442
60m ² 이하	35,289	5,000	15.6	2.3	794	117	1,985	269
60~85m ² 이하	76,627	106,107	33.8	49.6	1,314	1,801	3,286	4,142
85m ² 초과	64,550	60,228	28.5	28.1	829	883	2,073	2,031



[그림 1.4 - 2] 인구 및 주택계획(안)



(그림 1 - 1) 계획지구 위치도



(그림 1 - 2) 계획지구 인공위성도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자 함

2.2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 주관 행정기관 : 전주시
- 관계 행정기관 :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전주시
- 공고·공람 : 2022. 04. 08
 - 전주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공람 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 송천1동 주민센터
- 공람 기간 : 2022. 04. 11 ~ 2022. 05. 09
-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제출방법 : 소정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서면 제출

나.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2. 04. 21.(목) 오전 10:00
- 장 소 : 송천1동 주민센터(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16)
- 참석인원 : 지역주민 19명



[그림 9.1 - 1] 주민설명회 사진

9.1.2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결과

- 공고·공람기간 중 본 사업과 관련해 EIASS에 제시된 환경에 대한 의견이 1건 있었음.

의견 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여부	비고
박○○	<p>○ 생태면적률은 곧 물순환의 척도이고, 도심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라고 판단합니다. 토지이용과 수 환경 평가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투수 면적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때 토지이용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환경적 측면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공간유형별 기술요소(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라고 판단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익의 손실이 없어도 친환경적 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특히 바닥 포장을 투수면으로 확대 조성하려는 접근은 더한층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조각의 블록이라도 시공할 면적이 나오면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주변에 공원 녹지가 충분하다고 보행로나 광장을 불투수 블록 시공해도 된다는 생각은 제도의 취지나 친환경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투수면을 확대 적용하되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성능입니다. 투수 1등급 블록은 환경부가 0.4점의 가중치(자연지반 1.0점 대비)를 부여하는 것은 토양으로 물순환과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블록은 시공한 이후 가장 먼저 블록 사이 즉 틈새가 막힙니다. 틈새투수 시공은 시공의 어려움과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어 지양할 기술요소이자 막힘으로 인한 친환경적 기대 효과가 적거나 상실될 우려가 큼니다. 투수성능과 효율 및 투수지속성이 유지되는 포장재 선정을 당부드립니다.</p>	<p>○ 실시계획 수립시 관련규정 등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p>	

The screenshot shows the EIAS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and user options like '로그아웃', '개인정보수정', '사이트맵', and '사용자 매뉴얼'. Below this is a secondary navigation bar with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조회 및 정보입력', '협의통계', '국민참여', and '건강영향평가'.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주민의견수렴 조회' and feature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etails:

평가항목	도지이용	의견제출자	박용진
제목	올바른 생태면적을 이행 관련(투수포장)		
의견내용	<p>생태면적률은 곧 물순환의 척도이고 도심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라고 판단합니다. 토지이용과 수 환경 평가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투수면적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때 토지 이용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환경적 측면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공간유형별 기술요소(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라고 판단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익의 손실이 없어도 친환경적 개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특히 바닥 포장을 투수면으로 확대 조성하려는 접근은 더 한층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조각의 블록이라도 시공할 면적이 나오면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주변에 공원 녹지가 충분하다고 보행로나 광장을 불투수블록 시공해도 된다는 생각은 제도의 취지나 친환경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투수면을 확대 적용하되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성능입니다. 투수1등급 블록은 환경부가 0.4점의 가중치(자연지반 1.0점 대비)를 부여하는 것은 토양으로 물순환과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블록은 시공한 이후 가장 먼저 블록 사이 즉 틈새가 막힙니다. 틈새투수 시공은 시공의 어려움과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어 지양할 기술요소이자 막힘으로 인한 친환경적 기대 효과가 적거나 상실될 우려가 큼니다. 투수성능과 효율 및 투수지속성이 유지되는 포장재 선정을 당부드립니다.</p>		
첨부파일	투수1등급 블록 성능 비교 (1).mp4		

At the bottom right of the table, there is a '목록' (List) button.

전라환경영양평가시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입 명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라환경영양평가					
사업장 위치	전주시 덕진구 송원동2가 47-3번지 일원					
개 회 일 시	2022.04.21.(10:00)	장 소	송원1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			
사 입 자	전주시	주 관 기 관	전주시			
일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시 명		
01	도민선	덕진구-시정관 85. 657/101	010-2485-7467			
02	안동하	덕진구 103/1200	010-8588-0185			
03	이찬근	1111111	010-3651-1111			
04	홍민준	송원동	9439566			
05	송재민	호리동	90-3651-7080			
06	장금자	송원동	010 8082572			
07	정산숙	"	9. 3652022			
08	이수영	"	0103651-8083			
09	박지현	"	010-899-7557			
10	박재민	호리동	010-8385-392			
11	김종민	호리동	3651 001			
12	김민	"	3700			
13	이과자	호리동 11230/101	010 28991684			
14	최희민	호리동	01026542196			
15	이수영	"	010-6617-3990			

전라환경영양평가시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입 명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라환경영양평가					
사업장 위치	전주시 덕진구 송원동2가 47-3번지 일원					
개 회 일 시	2022.04.21.(10:00)	장 소	송원1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			
사 입 자	전주시	주 관 기 관	전주시			
일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시 명		
16	박민준	호리동 170	3651-2893			
17	안희민	전라환경영양평가 317/103	8845-3354			
18	최수복	호리동 105/201				
19	이수영	호리동 11230/101	010-2485-2415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그림 9.1 - 2]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전주시 - 공고 】

전주시 공고 제2022-972호

-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관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나.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3번지 일원
- 다. 규모 : 446,213㎡
- 라. 계획수립기관 : 전북개발공사(승인기관 : 전주시)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기간 : 2022. 04. 11. ~ 2022. 05. 09.
- 나. 공람장소 : 전주시청(5층) 신도시사업과, 송천1동 주민센터
- 다.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라. 공람방법 : 전국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 공고 및 전주시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3. 주민설명회 개최일정

- 가. 일시 : 2022. 04. 21.(목) 10:00
- 나. 장소 : 송천1동주민센터(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16)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가. 제출기한 : 열람공고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까지
- 나. 제출방법(제출양식은 공람장소 및 전주시 홈페이지에 비치함)
 -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서면 또는 팩스 제출(FAX 063-281-5290)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신도시사업과(☎063-281-5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1부.
-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우)제이엠이앤씨 빌딩 | 로그인 | 개인정보수정 | 사이트맵 | 사용자 메뉴열기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조회 및 정보입력
협의를통계
국민참여
건강영향평가

국민참여
Public participation

협의진행현황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평가서 초안 공람

행정처분현황

사용자지원

❖ 평가서 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명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위치	면적		면적
	소재지	소재지	
협의대상 (협의관련법령)	행정계획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사업구분	도시개발 / 도시개발구역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 전주시 승인기관 : 전주시 사업규모 : 446213㎡ 사업비 : 1,700 억원		

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협의업무 담당

협의기관	전북지방환경청	담당자	이지윤
담당부서	환경평가과	E-mail	leeju@korea.kr
전화번호	063-238-8872	Fax번호	063-238-8879

초안공람

초안	(초안)00000(표지 및 목차).pdf (초안)01000(요약문).pdf (초안)02000(개발기본계획의 개요).pdf (초안)03000(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pdf (초안)04000(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pdf (초안)05000(지역개발).pdf (초안)06000(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pdf (초안)07000(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pdf (초안)08111(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동식물상)_천마지구-동식물상.pdf (초안)08112(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자연환경자산)_천마지구-동식물상.pdf (초안)08120(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pdf (초안)08130(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df (초안)08140(수환경의 보전).pdf (초안)08211(환경기준 부합성-기상).pdf (초안)08212(환경기준 부합성-대기질).pdf (초안)08213(환경기준 부합성-온실가스).pdf (초안)08214(환경기준 부합성-토양).pdf (초안)08215(환경기준 부합성-소음진동).pdf (초안)08216(환경기준 부합성-일조장해).pdf (초안)08220(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pdf (초안)08230(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pdf (초안)08310(환경친화적 토지이용).pdf (초안)08320(연구-주거).pdf (초안)09000(종합평가 및 결론).pdf (초안)10000(부록)-1.pdf		
초안 공고일	2022.04.08	초안공람 기간	2022.04.11 ~ 2022.05.09
공람 장소	전주서청 신도시사업과, 송천1동 주민센터		
설명회 일시	2022.04.21		
설명회 장소	송천1동 주민센터		
의견제출 기간	2022.04.11 ~ 2022.05.16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2.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관계 행정기관(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가. 전북지방환경청

의견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여부	비고
전북 지방환경청	<input type="checkbox"/> 총괄 ○ 본 사업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의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여야 함	○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겠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시에는 수렴된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반영결과를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제시하고, 의견 중 부득이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시에는 수렴된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반영결과를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제시하고, 의견 중 부득이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음	
	<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전주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이 금번에 추진하는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상위계획과 금번 계획이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부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검토·제시하겠음	

의견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여부	비고
전북 지방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 행정계획을 단순 나열하기 보다는 연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상위계획상의 도시 생태축, 바람길 조성, 공원계획 등 환경계획이 동 도시개발사업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도면화하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상위계획상의 도시 생태축, 바람길 조성, 공원계획 등 환경계획이 동 도시개발사업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도면화하여 제시하겠음 	
	<p>2. 입지의 타당성</p> <p>가. 자연환경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는 덕진공원 인접 지역으로 지구 경계부 및 내부에 녹지·공원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덕진공원과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는 덕진공원 인접 지역으로 지구 경계부 및 내부에 녹지·공원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덕진공원과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존식생도의 경우 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 등에 대한 현황(식생보전등급 산정, 이식수목량 산정, 임목폐기물 발생량 산정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계획지구 내 군부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존식생도를 확인·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내 군부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존식생도를 확인·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으로 인한 훼손수목 1,980주 중 이식수목 198주를 ‘사업지구 녹지공간(공원)에 이식할 계획’으로 기술한바, 정확한 이식계획(가이식장 위치 및 식재계획, 도면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으로 인한 훼손수목 1,980주 중 이식수목 198주의 정확한 이식계획(가이식장 위치 및 식재계획, 도면 등)을 수립·제시하겠음 		

의견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여부	비고
<p>전북 지방환경청</p>	<p>○ 계획지구의 현재 생태면적률 및 목표 생태면적률이 미제시된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40%) 이상으로 목표생태면적률을 선정하고 산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p> <p>*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2.3.21 재정)'의 '부록3 생태면적률의 적용' 참고</p>	<p>○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40%) 이상으로 목표생태면적률을 선정하고 산정 자료를 제시하겠음</p>	
	<p>○ 계획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이 정성적으로만 기술되었으므로(검토서 296쪽) 관련 지침*을 토대로 계획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현황(배출원·흡수원, 배출·흡수량 등)을 조사·제시하고,</p> <p>－ 계획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된 경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시책을 파악하여 본 계획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및 저감방안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2.3.21 재정)'의 '부록8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참고</p>	<p>○ 계획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에 대해 관련 지침*을 토대로 계획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현황(배출원·흡수원, 배출·흡수량 등)을 조사·제시하겠음</p> <p>－ 계획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된 경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시책을 파악하여 본 계획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및 저감방안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p>	
	<p>○ 지하수질 현지조사가 계획지구 내에만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평가서 246쪽), 계획시행 시 부지정지로 인한 지하수 유출 등 인근 지하수 이용시설에 영향이 우려되므로,</p>	<p>○ 지하수질 현지조사를 지점을 추가하여 조사하겠음.</p>	

의견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여부	비고
전북 지방환경청	<p>-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의 지하수 이용시설 현황(위치, 용도, 채수량, 관정심도 및 제원, 음용 여부 등), 지하수 현황조사*(지하수질, 지하수위 분포, 지하수 유동 방향 등) 및 계획시행시 영향을 예측·제시하여야 함</p> <p>*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 참고</p>	<p>-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의 지하수 이용시설 현황(위치, 용도, 채수량, 관정심도 및 제원, 음용 여부 등), 지하수 현황조사*(지하수질, 지하수위 분포, 지하수 유동 방향 등) 및 계획시행시 영향을 예측·제시하겠음</p>	
	<p>나. 생활환경의 안정성</p> <p>(1) 환경기준 부합성</p> <p>○ 계획지구 내 자동차 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포함한 다수의 철거 대상 지장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평가서 458쪽) 군부대가 위치함에도 관련 내용이 평가서에 미제시되었으나,</p> <p>- 이러한 시설·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의 가능성 및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확인되지 않은 오염토양으로 인한 향후 이용자 및 공사시 작업자의 건강 영향, 토양오염 확산 등이 우려되므로,</p> <p>•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 ’17.9.25. 일부개정)’ 등 붙임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 사항을 참고하여 계획지구의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p> <p>※ 부지의 오염정도, 정화 가능성, 위해도에 따라 정화비용 및 기간이 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비용 및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함이 바람직함</p>	<p>○ 계획지구 내 자동차 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포함한 다수의 철거 대상 지장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군부대가 위치하므로,</p> <p>- 이러한 시설·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의 가능성 및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확인되지 않은 오염토양으로 인한 향후 이용자 및 공사시 작업자의 건강 영향, 토양오염 확산 등이 우려되므로,</p> <p>- 기존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지구의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제시하겠음.</p>	

의견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여부	비고
<p>전북 지방환경청</p>	<p>○ 계획지구 북측으로 동부대로(도로) 및 전라선(철도)이 분포하고 있어 계획지구 내 정온을 요하는 시설(주거용 시설 등)에 대한 소음 영향이 예상되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영향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한 소음 평가를 통해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계획지구 내 정온시설에 대한 건축물 배치계획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획지구 주변 도로·철도의 교통량 및 속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소음 영향을 미치는 정량적 범위를 토지이용계획 도면과 중첩하여 제시 • 계획지구 내 정온시설에 대한 건축물 배치계획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획지구 주변 도로·철도의 교통량 및 속도, 계획지구 내 정온시설 형상 및 배치 등의 정보에 근거한 소음 평가(3차원 소음예측모델 적용 등) 결과 제시 • 상기의 소음평가 결과를 통해 계획지구 내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영향이 예상될 경우 소음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건축선 이격거리 확보, 완충녹지 조성, 상업시설 등의 전면 배치, 층수 조정 등) 수립과 소음 저감효과 검토 	<p>○ 계획지구 북측으로 동부대로(도로) 및 전라선(철도)이 분포하고 있어 계획지구 내 정온을 요하는 시설(주거용 시설 등)에 대한 소음 영향이 예상되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사항을 고려한 소음 평가를 통해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 계획지구 내 건축물 배치계획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계획지구 주변 도로·철도의 교통량 및 속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소음 영향을 미치는 정량적 범위를 토지이용계획 도면과 중첩하여 제시하겠음. • 계획지구 내 정온시설에 대한 건축물 배치계획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 • 상기의 소음평가 결과를 통해 계획지구 내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영향이 예상될 경우 소음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수립하겠음. 	

의견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여부	비 고
<p>전북 지방환경청</p>	<p>(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도시개발계획은 사업면적이 446,213㎡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 「폐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 예외 인정 사항(폐촉법 제6조제2항, ‘20.6.9. 신설) 해당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이용계획, 대기질·악취, 위생공중보건 등 관련 항목의 추가적인 영향 예측 및 저감계획을 수립·제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 예외 인정 사항(「폐촉법」 제6조제2항, ‘20.6.9. 신설) 해당 시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대한 근거자료(추가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유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 여부 등)을 제시하여 「폐촉법」 제6조제2항 적용 대상 사업임을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도시개발계획은 446,213㎡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 「폐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 예외 인정 사항(폐촉법 제6조제2항, ‘20.6.9. 신설) 해당 여부를 검토·제시하겠음.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 예외 인정 사항(「폐촉법」 제6조제2항, ‘20.6.9. 신설) 해당 시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대한 근거자료(추가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유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 여부 등)을 제시하여 「폐촉법」 제6조제2항 적용 대상 사업임을 증빙하겠음 	

나. 전라북도

의견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여부	비 고
전라북도	<p>□자연환경(자연생태과)</p> <p>▶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p> <p>○사업시행 시 동·식물상,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소음, 빛, 비산먼지 등의 환경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방안과 관련 법규 및 행위 제한 등이 이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사업시행 시 동·식물상,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소음, 빛, 비산먼지 등의 환경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방안과 관련 법규 및 행위 제한 등이 이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음</p>	
	<p>○공사 시 법정보호종 등 야생생물이 포획, 채취,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공사 관계자의 야생생물 보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p>	<p>○공사 시 법정보호종 등 야생생물이 포획, 채취,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공사 관계자의 야생생물 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겠음</p>	
	<p>○사업시행 전·후 생태계교란식물, 귀화식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 계획, 주변 보호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p>	<p>○사업시행 전·후 생태계교란식물, 귀화식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 계획, 주변 보호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겠음</p>	
	<p>○사업구역 내 토지의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면적 확보를 하여야 함</p>	<p>○사업구역 내 토지의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면적을 확보하겠음.</p>	
	<p>▶지형 및 생태축 보전</p> <p>○지형변형 및 토사유출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계획·시행하고, 사업구역을 포함한 지역 도심 내 생태축이 단절되지 않고 보전되도록 하여야 함</p>	<p>○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변형 및 토사유출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계획·시행하겠으며, 생태축이 보전되도록 하겠음</p>	
	<p>□대기환경(자연생태과)</p> <p>▶대기질</p> <p>○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 시 살수 및 세륜 시설 등 저감방안 수립</p>	<p>○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 시 살수 및 세륜 시설 등 저감방안 수립하였음</p>	

의견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여부	비 고
전라북도	<p>□소음환경(환경보전과)</p> <p>▶소음·진동 영향</p> <p>○굴삭기 등 건설장비 가동 등으로 특정공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전주시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득한 후 공사시행 할 것</p>	<p>○굴삭기 등 건설장비 가동 등으로 특정공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전주시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겠음</p>	
	<p>○소음·진동 피해 및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설명 등 주민 협의하여 주시고</p>	<p>○소음·진동 피해 및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설명 등을 통해 주민들과 협의하겠음</p>	
	<p>○공사시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피해 및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공사장) 준수할 것</p>	<p>○공사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피해 및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공사장) 준수하겠음</p>	
	<p>□자원순환(환경보전과)</p> <p>▶친환경적 자원순환</p> <p>○공사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처리할 것</p>	<p>○공사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처리하겠음</p>	
	<p>○폐기물은 배출,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흩날림, 유출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p>	<p>○폐기물은 배출,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흩날림, 유출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p>	
	<p>○발생폐기물은 생활(일반, 음식물, 재활용), 사업장(일반, 지정) 및 건설폐기물 등 성상 및 종류별에 따라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p>	<p>○발생폐기물은 생활(일반, 음식물, 재활용), 사업장(일반, 지정) 및 건설폐기물 등 성상 및 종류별에 따라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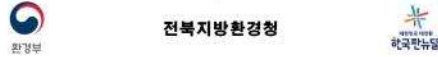
의견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여부	비 고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운영과정에서 발생폐기물로 인한 민원 및 환경오염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운영과정에서 발생폐기물로 인한 민원 및 환경오염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환경보전과) ○ 토목공사 과정에서의 특정 공사 소음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 기타 환경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고 및 허가기관에 사전 충분한 협의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공사 과정에서의 특정 공사 소음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 기타 환경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고 및 허가기관에 사전 충분한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물환경관리과) ▶ 상수원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 상수도 시설 관련 전주시 상수도 담당 부서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시설 관련 시 상수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하수, 물 재이용 등 ○ 개인하수, 물 재이용은 시 담당 부서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하수, 물 재이용 관련 기준에 따라 시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온천 ○ 지하수, 온천 관련 시 담당 부서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온천 관련 시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 ○ 토양 관련 시 담당부서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 관련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점오염원 ○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총량관리 ○ 사업시행 전·후 배출부하량 산정·제시 ○ 증가된 배출부하량만큼 할당 후 사업추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전·후 배출부하량 산정·제시하겠음 ○ 증가된 배출부하량만큼 할당 후 사업을 추진하겠음 	

의견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여부	비 고
전라북도	<p>□새만금수질개선과</p> <p>▶하수도 및 개인하수, 물재이용 등</p> <p>○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 처리계획 부재에 따른 보완 필요</p> <p>－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 여부 및 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 필요(전주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검토 부재)</p> <p>※ 생활오수 적정 처리를 위해 하수도 시설 관련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처리할 것</p>	<p>－</p> <p>－ 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주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하겠음</p> <p>※ 생활오수 적정 처리를 위해 하수도 시설 관련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음</p>	
	<p>○공사 중 발생하는 오수처리계획 부재에 따른 보완 필요</p> <p>－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계획 필요</p> <p>※ 개인하수 관련 시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최종 협의하여 처리할 것</p>	<p>－</p> <p>－ 공사시 투입인부 및 감리 인원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소 및 공사현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계획임</p> <p>※ 개인하수 관련 시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최종 협의하여 처리하겠음</p>	

다. 전주시

의견제출자	의견 내용	반영 여부	비 고
전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의견 ○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남측 천마산 경계지역에 대한 육상동물 등의 도로 침입 방지대책(로드킬 예방 등)을 제시하여 주변 서식지로 이동·분산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남측 천마산 경계지역에 대한 육상동물 등의 도로 침입 방지대책(로드킬 예방 등)을 제시하여 주변 서식지로 이동·분산을 유도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현장사무소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토록 계획 검토 필요(주변 위치 화장실 이용 권장계획 실효성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현장사무소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토록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군사시설 내 토양오염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위험물저장고 등)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 방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토양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 방법을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영향예측(p.336)에 반영된 투입장비의 적정대수를 재반영하여 소음예측이 필요하며, 사업부지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부지 고도 차이를 고려한 소음저감대책(가설방음판넬의 규격 등) 재검토 필요 - 운영시 도로 신설로 인한 교통량 조사·예측을 통한 소음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반영된 투입장비의 적정대수를 재반영하여 소음예측을 시행하겠으며, 사업부지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부지 고도 차이를 고려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운영시 도로 신설로 인한 교통량 조사·예측을 통한 소음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전북지방환경청 - 공문



수신 : 수신자 참조
(관급)
제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회신(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1. 전주시 신도시사업과-1392(2022.4.8.)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귀 기관에서 검토 요청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불의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검토의견 1부, - 권.

전북지방환경청

주소지 : 전주서청(신도시사업과), 한국환경연구원

주무관	이희용	과장	정국환	담당	2022.5.3 유승광
주소지					
전화	환경평가과-1675	(2022. 5. 3.)	전주 신도시사업과-1794	(2022. 5. 4.)	
우	5487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보안로 120 (충장) 환경평가과	/	http://img.go.kr/img	
전화번호	063-208-0572	팩스번호	063-208-0579	/	jeju@me.go.kr (이메일) 063

전북지방환경청 -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 (JJ20220077)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3번지 일원
- 규 모 : 446,213㎡
(주거용지 249,728㎡, 상업용지 11,792㎡, 기반시설용지 182,760㎡, 기타 1,933㎡)
- 계획수립자/승인기관 : 전주시/전주시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환경영향평가 대상구역(25만㎡) 이상)

I. 총괄

- 본 사업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의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시에는 수립된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반영 결과를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제시하고, 의견 중 부득이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II. 항목별 검토의견

I. 계획의 적정성

-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전주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이 금번에 추진하는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상위계획과 금번 계획이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상위계획 및 관련 행정계획을 단순 나열하기 보다는 연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상위계획 상의 도시 생태축, 바람길 조성, 공원계획 등 환경 계획이 동 도시개발사업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도면화하여 제시

전북지방환경청 - 2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는 덕진공원 인접지역으로 지구 경제부 및 내부에 녹지·공원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덕진공원과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현존식생도의 경우 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 등에 대한 현황(식생보전등급 산정, 이식수목량 산정, 임목폐기를 발생량 산정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계획지구 내 군부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존식생도를 확인·제시하여야 함
- 계획수립으로 인한 훼손수목 1,980주 중 이식수목 198주를 '사업지구 녹지공간(공원)에 이식할 계획'으로 기술한 바, 정확한 이식 계획(가이식장 위치 및 식재계획, 도면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지구의 현재 생태면적률 및 목표 생태면적률이 미제시된 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40%) 이상으로 목표생태면적률을 선정하고 산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 '환경영향평가서'들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2.3.21. 제정)의 '부록3 생태면적률의 적용' 참고
- 계획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이 정성적으로만 기술되었으므로(검토시 296쪽) 관련 지침을 토대로 계획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현황(배출원·용수원, 배출·흡수량 등)을 조사·제시하고, - 계획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된 경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시책을 파악하여 본 계획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및 저감방안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환경영향평가서'들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2.3.21. 제정)의 '부록8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참고
- 지하수질 현지조사가 계획지구 내에만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평가서 246쪽), 계획시행시 부지경지로 인한 지하수 유출 등 인근 지하수 이용시설에서 영향이 우려되므로,

전북지방환경청 - 3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의 지하수 이용시설 현황(위치, 용도, 채수량, 관정심도 및 제반, 용용어부 등), 지하수 현황조사(지하수원, 지하수위 분포, 지하수 유출 방향 등) 및 계획시행시 영향을 예측·제시하여야 함
- *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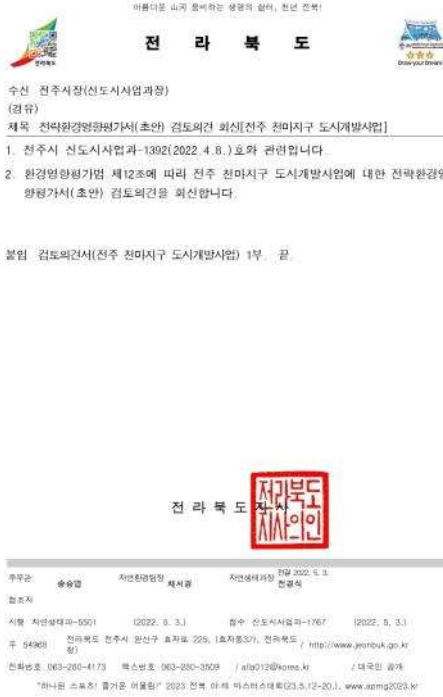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I) 환경기준 부합성

- 계획지구 내 자동차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포함한 다수의 철거 대상 지장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평가서 458쪽) 군부대가 위치함에도 관련 내용이 평가서에 미제시되었으나, - 이러한 시설·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의 가능성 및 현황이 자세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확인되지 않은 오염토양으로 인한 향후 이용자 및 공사시 작업자의 건강 영향, 토양오염 확산 등이 우려되므로, -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 '17.9.25.일부개정)' 등 불임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 사항을 참고하여 계획지구의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 부지의 오염정도, 정화 가능성, 위해도에 따라 정화비용 및 기간이 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비용 및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함이 바람직함
- 계획지구 북측으로 동부대로(도로) 및 전라선(철도)이 분포하고 있어 계획지구 내 경운을 요하는 시설(주거용 시설 등)에 대한 소음 영향이 예상되나, - 소음 영향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한 소음 평가를 통해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계획지구 내 정온시설에 대한 건축물 배치계획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획지구 주변 도로·철도의 교통량 및 속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소음 영향을 미치는 정량적 범위를 토지이용계획 도면과 중첩하여 제시

<p>☑ 전북지방환경청 - 4</p>	<p>☑ 전북지방환경청 - 5</p>
<p>· 계획지구 내 정온시설에 대한 건축물 배치계획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획지구 주변 도로·철도의 교통량 및 속도, 계획지구 내 정온 시설 형상 및 배치 등의 정보에 근거한 소음평가(3차원 소음예측모델 적용 등) 결과 제시</p> <p>· 상기의 소음평가 결과를 통해 계획지구 내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영향이 예상될 경우 소음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건축선 이격거리 확보, 완충녹지 조성, 상업시설 등의 권면 배치, 층수조정 등) 수립과 소음 저감효과 검토</p> <p>(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변 도시개발계획은 사업면적이 446,213㎡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 「폐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 예외 인정 사항(폐촉법 제6조제2항, '20.6.9. 신설) 해당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이용계획, 대기질·악취, 위생 공중보건 등 관련 항목의 추가적인 영향 예측 및 저감계획을 수립·제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 예외 인정 사항(「폐촉법」 제6조제2항, '20.6.9. 신설) 해당시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대한 근거자료 (추가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유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 여부 등)를 제시하여 「폐촉법」 제6조제2항 적용 대상 사업임을 증명 <p>붙임 : 토양오염 현황 파악(참고) 1부, 글.</p>	<p><붙임></p> <p><토양오염 현황 파악(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연성 조사) 계획지구 내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하여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및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토양오염 개연성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 '17.9.25.일부개정) 중 기초조사(자료조사, 현장조사, 청취조사 등) 방법을 따라 상세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하여 계획지구 내에 현재 존재하거나 과거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97호, '19.6.10) 별표 참조), 폐기를 수증처리업체, 폐기를 방치지역, 공장, 유류저장탱크(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규모 미만 포함, 비닐하우스 및 축사 난방용 등 포함), 시력장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지역을 자료조사, 현장조사, 청취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여 지형도 및 위성사진에 표시하고 세부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 - 확인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지역에 대해서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청취조사 등을 통해 토양오염 개연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현장 사진, 면적, 근거 등과 함께 표로 정리하여 제시 - 주유소, 위염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기존 토양오염감사(토양오염도감사 및 누출감사) 결과 확인 ○ (토양오염조사)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여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 '17.9.25.일부개정) 중 개황조사 방법을 따라 상세한 토양오염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표토, 심토, 유류 및 유독물 등의 지상·지하저장시설별로 시료채취 지점, 밀도, 심도 등을 결정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 -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지점수, 조사지점, 심도 등의 결정 근거와 조사지점의 주소, 좌표, 현장 방문 시 확인된 토지이용용도 및 미래 용도 현재 및 사업에 의해 변경 예정인 지목 등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조사지점의 사진을 첨부) - 조사 결과는 지점별, 항목별로 현재 지목 및 사업에 의해 변경예정인 지목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여부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 ○ (조치계획) 위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정밀조사, 정화계획 및 철거 시 토양오염저감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 전라북도 - 공문



☑ 전라북도 -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 검토항목

구분	원도사항	원도여건
자연환경 [자연생태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 시 동·식물상,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소음, 빛, 배산전지 등의 환경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방안과 관련 법규 및 행정 제한 등이 이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 시 벌집보호 등 야생생물 보호, 채취,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공사 관계자의 야생생물 보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전·후 생태계교란자를, 귀화종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 계획, 주변 보호지역으로의 확산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사업구역내 도지의 생태보 가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환경 확보를 위하여 함
	지방 및 생태축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변형 및 보지유출이 최소화된도의 사업을 계획·시행하고, 사업구역을 포함한 지역 도상에 생태축이 단절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함
대기환경 [자연생태계]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산전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 시 산수 및 채굴시 설 등 저감 방안 수립
소음환경 [환경보전과]	소음·진동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삭기 등 건설장비 작동 등으로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 소음·진동 피해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설명 등 주민협력을 하여 주시오 ○ 공사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및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공약사항)을 준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처리할 것
자연환경 [환경보전과]	환경영향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은 배출,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분말, 유출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발판재기물은 생활쓰레기(음식물, 생활쓰레기, 사육쓰레기(똥, 지렁이) 및 건설풀레기 등)를 수집 및 운반할 때 마다 전용수거차(리프트차, 폐기물컨테이너 및 컨테이너)를 차량운행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

☑ 전라북도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 ○ 공사·운영과정에서 발생폐기물로 인한 민원 및 환경오염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기타 [환경보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공사 과정에서 특정공사 소음의 비산전지 저감시설 설치 등 기타 환경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 검토 및 허가관련에 사전 충분한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도 ○ 하수도 ○ 개인하수, 물 재이용 등 ○ 지하수, 온천 ○ 도랑 ○ 배설오염원 ○ 수질오염 ○ 수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상수도 시설관련 인허가 상수도 부서 협의 ○ 세관금수질개선과 소관 ○ 개인하수, 물재이용은 시 담당부서와 협의 ○ 지하수, 온천관련 시 담당부서와 협의 ○ 도랑관련 시 담당부서와 협의 ○ 세관금수질개선과 소관 ○ 사업시행 전후 배출부담량 산정·제시 ○ 증가된 배출부담량을 할당 후 사업추진 가능
[세관금 수질개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우수 처리계획 부재에 따른 보완 필요 ○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여부 및 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 필요(인수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별도 부재) ○ 생활우수 적정처리를 위해 하수도 시설 관련 해당 시·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처리할 것 ○ 공사 중 발생하는 우수 처리 계획 부재에 따른 보완 필요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적정계획 필요 ○ 개인하수 관련 시·군 담당부서와 최종 협의하여 처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및 개인하수, 물재이용 등 	

<p>☑️ 전주시 - 공문</p>	<p>☑️ 전주시 - 1</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주광역시 「한국과 꽃이, 전주」</p>   </div> <p>수신 신도시사업과장 (경유) 제목 전라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회신(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p> <p>1. 신도시사업과-1392(2022.04.08.)호와 관련입니다. 2.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라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p> <p>붙임: 검토의견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환경 위생 과장</p> <hr/> <p>부서: 환경영향평가과 (2022. 4. 26) 부서: 건설</p> <p>담당: 오재원 직급: 차장</p> <p>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로10길 10, 전라북도 5층 1차 / jn@jeonju.go.kr</p> <p>전화번호: 063-251-2331 팩스번호: 063-251-2613 onk@jeonju.go.kr / 063-251-2613</p> <p>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신고합니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라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p> </div>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p>□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대상지 남측 천마산 경계지역에 대한 육상동물 등의 도로 침입 방지대책(로드킬 예방 등)을 제시하여 주변 서식지로 이동·분산 유도 ○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현장사무소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도록 계획 검토 필요(주변 위치 화장실 이용 권장계획 실효성 재검토) ○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군사시설 내 토양오염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위험물저장고 등)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 방법 제시 ○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공사 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영향예측(p.336)에 반영된 투입장비의 적정대수를 재반영하여 소음예측이 필요하며, 사업 부지 주변 정은 시설에 대한 부지 고도 차이를 고려한 소음저감대책(가설방음판넬의 규격 등) 재검토 필요 - 운영 시 도로 신설로 인한 교통량 조사·예측을 통한 소음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필요